

거치식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 ① 거치식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 ③ 양도성 예금증서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이 자

-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50%
 -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
 -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 ③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장기에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 ①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③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 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①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 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에 예금주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 ② 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 전 예금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③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 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 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 무기명식 예금 증서의 면책

은행이 예금 증서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자동연장(재예치)

- ① 거래처가 자동연장(재예치)을 원할 때에는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방식에 의하여 예금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거래처에게 자동연장(재예치) 됨을 설명하고 거래처가 통지를 요청한 경우 거래처가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한다.